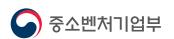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및 가점사업 가이드북

2023.03







PART 1.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 요약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요약	5
1. 세제	1)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9
	2)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11
•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12
,	4)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13
,	5)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투자 시 소득공제	14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15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16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17
,	9)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18
	10)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19
,	11)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20
2. 금융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21
	2)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22
	3)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23
	4)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24
	5)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허용	24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25
,	7)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25
	8)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26
	9)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26
,		
3. 창업	1)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27
	2)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27
	3)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28
	4)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28
	5) 벤처기업 소규모.간이합병의 특례	29
	6)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29
,		

	7)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원) 휴직 허용	30
	8)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31
4. 입지	1)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32
	2)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33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34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35
	5)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36
5. 특허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우선심사	37
	2)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38
6. 인력	1)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39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41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41
	4)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42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43
	6)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45
	7)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46
	8)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47
	9)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47
	10)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관련 학과)	48
7. 광고	1)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49
	2)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50

PART 2. 가점대상 지원사업

* 요약	벤처기업 가점대상 지원사업 요약	52
1. R&D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4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54
	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55
	4)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55
	5) 산학연 Collabo R&D 사업	56
	6)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56
	7)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	57
	8)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57
	9)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58
	10) 지역특화산업육성+(R&D)	58
•	1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연계R&D	59
	1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59
	13)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60
	14)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60
	15)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61
	16)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61
	17)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62
	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62
	19)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63
•		
2. 인력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64
	2)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64
	3)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65
3. 판로/수출	1)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66
	2)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66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지원제도 및 가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은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각 지원제도 및 가점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I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 1. 세제
- 2. 금융
- 3. 창업
- 4. 입지
- 5. 특허
- 6. 인력
- 7. 광고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요약

분류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 · 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6②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2의3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을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3의2
	연구전담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 12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른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6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16의2①
세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 46의7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 46의8①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 58의3②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을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16①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 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88의4①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규정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8

분류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양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 22③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 투자조합 출자 허용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국민연금기금 증식사업 대상	국민연금법 § 102②7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8①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 32의2③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 ·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9의23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미만 이라도 방산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2-2호) § 6④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②5
창업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산업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권도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6①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산업재산권 등의 감정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6②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의3②
	벤처기업 소규모·간이 합병 특례	벤처기업은 소규모(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 또는 간이합병시(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80% 이상 보유)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의9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의10①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결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의11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①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②

분류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입지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 공장 설치 자격 특례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ㆍ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8의2①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7의4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8의3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58②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벤처기업 우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부고시 제2022 -179호)§ 12④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자부 고시제2022-228호)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ㆍ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특허법 시행령 § 9 실용신안법 시행령 § 5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 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겸직한 교육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 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7①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 · 경역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3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1의3②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의2①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26의①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벤처기업 창업가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가는 병역 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병역법 시행령 § 129①8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제1922호) § 22, § 25

분류	지원제도	세부내용	법적근거
인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수를 완화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 상시근로자 5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908호) § 10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96호) §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여성가족부예규 제52호) § 2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 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0호) § 5①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 관련학과)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12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활동(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2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1)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지원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벤처기업)
- 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
 - 1. 광업
 - 2. 제조업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물류산업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16.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18. 전시산업

지원내용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 감면 적용 제외 경우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
 -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②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함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0%를 감면

신청 · 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처리절차

• 감면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 접수 → 감면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2)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 금액이란?

- 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함
 - ①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② 양도가액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사후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신청 · 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등

처리절차

공제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126,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제1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은 제외)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신청 · 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일몰, 2025년 12월 31일)

4)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지원대상

- (대상기관)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대상직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기업부설 연구기관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지원내용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신청 · 접수

•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

제출서류

•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항목 적용

처리절차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신고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5)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거주자(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대상

•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 지원 대상 세부 요건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 ·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청 · 접수

• 소득공제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소득공제 신청서 등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rightarrow 접수 \rightarrow 공제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126,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일몰, 2025년 12월 31일)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연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

지원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신청 · 접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청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처리절차

•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126,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지원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경우

※ 전략적 제휴의 요건

-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기술 · 정보 · 시설 · 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신청 · 접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

처리절차

• 과세이연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126,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제1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지원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하는 경우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 이내 기업
 -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 기업 매각의 요건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기업의 주주인 자
- (기업매각 요건)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지원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 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신청 · 접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

처리절차

• 과세이연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용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126,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 (일몰, 2023년 12월 31일)

9)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지원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기업
 - ※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청년창업벤처기업 요건
 - 창업벤처중소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청년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일 것

지원내용

- 지방세 경감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방세를 경감
 - ①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경감
 - ②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단, 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경감

신청 · 접수

-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 ※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처리절차
- 감면 신청(주요 제출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www.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일몰, 2023년 12월 31일)

10)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 채용시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의 등 지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다를 수 있음

처리절차 • 사업 공고 → 신청 · 접수 → 평가 → 선정 통보 → 최종 지원

- 사업 주최에 따라 사업 공고 일정 다르며,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

11)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서류 제출 → 접수 → 공제적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 1350, 홈페이지 : 1350.moel.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 : 126,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최고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

지원대상 • 벤처기업

법적근거

지원내용 ● 벤처기업은 보증한도 50억원 대상 보증 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 시 '홈페이지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신청기업의 업종,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용, 신청금액 등이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증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상담과정에서 보증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 · 점검 이후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서류를 안내

• 상담시 준비서류

• 「기술보증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사업계획서 등 기업현황 설명자료,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

처리절차 • 보증신청(인터넷, 영업점 방문)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평가·조사 → 심사·승인

→ 보증 약정 →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

2)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인 신용보증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ㆍ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상담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서류 준비 안내

처리절차

• 신청기업의 보증신청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평가·조사 → 심사승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1120)

→ 보증 약정 → 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https://www.kibo.or.kr/dbranch/index.do)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3)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코스닥 상장 심사 시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일부 기준 하향 적용

지원대상

- 벤처기업
 - 단,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투자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지원내용

- 벤처기업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의 일부 기준에서 하향 적용 대상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

신청 · 접수

- 신규상장 기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상장 희망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혹은 당해사업연도)
 - * 그 이후의 신청 및 접수 절차는 한국거래소 신규상장 절차에 준하며, 세부적인 상장심사 내용(신청서 제출, 심사요건 등)은 한국거래소「2022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 참고

제출서류

• 상장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 진행

처리절차

- 신규상장 기준 상장신청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준비과정과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공모 후 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로 진행
- 상장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 약 4개월 기간 소요
- 상장예비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krx.co.kr)을 통하여 공시

문의처

• 한국거래소 민원센터 (대표전화: 1577-0088, 홈페이지: www.krx.co.kr)

법적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4)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 지원내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자금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10%)에서 벤처기업에 투자가능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5)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허용

국민연금기금 증식을 위해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지원대상 ●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원내용 ●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해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문의처 ● 국민연기금운용본부 (대표전화: 1355,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

●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7호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지원대상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정하는 조합

지원내용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 ※ 투자관리전문기관이란?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요건
 -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
 -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보유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표전화 : 044-201-1000, 홈페이지 : www.mafra.go.kr)

법적근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7)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지원대상

•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 10% 한도에서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문의처

• 교육부 (대표전화 : 02-6222-6060, 홈페이지 : www.moe.go.kr)

법적근거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

8)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창업.벤처기업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문의처 ●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2500, 홈페이지 : www.fsc.go.kr)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9)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미만이라도 방산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가능

지원대상 ● 국방벤처협약기업

-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함

* 국방벤처 : 국방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방산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가능

- 융자규모 및 지원 시기 등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하는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다름

신청 · 접수 • 온라인 접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제출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확약서,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벤처기업확인서,

자금집행계획서 등

- 사업시행 계획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필요

처리절차 ● 융자신청 접수 → 사업, 금액 타당성 검토 → 관리위원회 → 융자추천 (융자사업자 선정) →

대출협의 및 대출실행 →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문의처 ● 방위사업청 (대표전화 : 1577-1118, 홈페이지 : www.dapa.go.kr)

법적근거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고시 제2022-2호)」제6조제4항





1)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산업재산권 포함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 확대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산업재산권 등)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2)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평가 시 공인감정인 외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지원대상 • 벤처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할 경우

지원내용 ●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됨

※ 기술평가기관이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3)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경우 10년간) 유예

지원대상

• 벤처기업 중 대기업집단 편입 해당 기업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10년간 유예

※ 세부 요건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해당된 날부터 7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대표전화 : 1670-0007, 홈페이지: www.ftc.go.kr)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4)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 통지 가능
 - 「상법」상 통지일: 2주 전 → 벤처기업: 7일 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제2항

5) 벤처기업 소규모 · 간이합병의 특례

벤처기업 소규모.간이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기준 우대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소규모 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소규모합병(존속회사 주총대체): 합병시 존속회사 신주발행수가 전체의 20% 이하일 경우

• 간이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간이합병(소멸회사 주총대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8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9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0제1항

6)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결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가능

지원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지원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총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

이사와 공인으도 걸음이는 제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1

7)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대표 및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 등

※ 교육공무원이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지원내용

• 교육공무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5년간(창업 준비기간 6개월 포함) 휴직 가능(소속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콜센터 : 1357,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8)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교육공무원등 또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지원대상

• 교육공무원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

※ 교육공무원이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구고린여구기과이 여구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지원내용

- 교육공무원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은 다음 요건 중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 겸직 가능
 -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 ·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콜센터: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1)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그 소속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건축물에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벤처기업 창업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연구 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함

신청 · 접수 ● 지원자가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승인·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함

• 해당 기관이 속한 시군의 장은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함

• 신청자가 퇴직 혹은 졸업을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공장의 사용이 가능함

• 실험실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면적이 해당 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2)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벤처기업은 입주중인 창업보육센터 또는 직접지역에 입주(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참고

-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예, 기기/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창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 및 연구기관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의 제공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음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구조 안전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도시형공장 및 관련 시설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4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3제1항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제감면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요건
 - 해당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대학이나 연구기관 존재
 -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의 존재

지원내용

- (세제감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의 37.5% 감면
 -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37.5% 감면

신청 · 접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 우편 등이 있음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처리(소요시간 총 5일)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혜택 부여

지원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요건
 - 해당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대학이나 연구기관 존재
 -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의 존재

지원내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신청 · 접수

- 기업이 속한 지역 관할 시청, 구청, 군청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출서류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소요시간 총 5일)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110.go.kr/)
-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일몰, 2023년 12월 31일)

5)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투자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지원대상

• 임대전용 산업단지 및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지원내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시 벤처기업 우대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 된 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1순위: 창업중소기업 2순위: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3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4순위: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5순위: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 우대	1.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2.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공장 이전 등* 우대 :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입주

신청 · 접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입주지원팀

제출서류

- (분양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임대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입증서류 등

처리절차

- (분양시) ① 입주기준 공고 \rightarrow ② 입주계약 신청 \rightarrow ③ 입주심사 \rightarrow ④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기준공고)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에 공고함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 (입주계약 신청) 서류접수
 -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입주자격 및 대상 업종 검토
 -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① 입주계약 신청 → ② 입주심사 → ③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 서류접수
 -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입주자격 및 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에 적합시 계약 체결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전화: 070-8895-7000, 홈페이지: https://www.kicox.or.kr/)

법적근거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9호」제12조제4항
-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8호)」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벤처기업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특허 우선심사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 출원인과 기업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
 - 다만,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업체)가 법인이 아니어서 기업의 명의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일치하고, 출원시 해당 기업이 법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내용

•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확인을 거쳐 특허 및 실용실안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함

신청 · 접수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대상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신청절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서류 접수 \rightarrow ② 신청료 납부(접수증 발급) \rightarrow ③ 심사진행 \rightarrow ④ 결과통보

• 우선심사 과정 관련 추가사항

※ 우선심사 관련 추가내용

- 심사가 착수되면 심사신청의 취하는 불가능함
- 일반적으로 접수로부터 심사여부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이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개월, 4개월, 8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통보됨
- 심사료는 특허는 20만원, 실용신안은 10만원

문의처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대표번호:1544-8080,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

법적근거

• 「특허법 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제5조

2)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직중인 교육공무원등이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재산권 이용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직중인 교육공무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학교원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 고려사항

- 전용실시권은 본권의 부수되는 권리로 기존의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함
- 휴직 · 퇴직 이후 완성한 건에 대해서는 필요 또는 희망하는 경우 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권을 부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성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처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 1544-8080,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7제1항





1)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임직원 포함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액도 확대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들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게 스톡옵션 부여 가능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 ②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가진자 (교육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산업/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 ③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산업기술분야 비영리 법인)
 -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신고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을 의미함
- (부여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 i) 신주발행, ii) 자기주식, iii) 차액정산형의 세 가지로 구분됨
 - 신주발행: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서 신주를 발행
 - 자기주식: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서 자기주식을 교부
 - 차액정산형: 대상자가 받은 부여주식의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
- (부여한도)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총수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함
 - *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임
- (부여가격) 원칙적으로 부여가격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하나, 신주발행에 한정하여 시가이하로 부여 가능*
 - 일반 주식/상장회사의 행사가격은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해야 함
 - ※ 시가 이하의 조건
 - ① 권면액 이상의 행사가격
 - 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인당 5억원 이하
 - ▶ 계산식: (부여 당시 시가-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수
- (행사기간)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날 혹은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기간을 설정함

제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정관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그 외에 요청하는 근거서류(원본대조필 필요)

※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 서류 제출 → 신고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3제7항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함 (벤처기업 2명 이상)

> - 소기업 3명 이상(3년 미만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대표번호 : 1379 홈페이지 : www.rnd.or.kr)

법적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3호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3명 이상으로 완화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함 (벤처기업 3명 이상)

> - 중소기업 5명 이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번호: 1566-1114, 홈페이지: https://www.kocca.kr/)

법적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4)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대표(벤처기업 창업자) 및 예비벤처 대표(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중 입영 대상자

지원내용 ●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

-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 불가

신청 · 접수 ●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직접/우편 접수

-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결과 통보

문의처 ● 병무청(대표번호 : 1588-9090, 홈페이지 : https://www.mma.go.kr/)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8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련 제1922호)」 제22조, 제25조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수를 5명이상 으로 완화

지원대상

•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수를 완화하여 적용 (벤처기업 5명)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는 10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신청 · 접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접수) 매년 6월 중 실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신청관리 (산업기능요원 신청 ·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홈페이지, www.smes.go.kr/sanhakin)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제출서류	제조업	정보처리업	광업, 에너지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	1	1
중소기업확인서	1	1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1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1	1
최근 결산년도(1~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1년간)	1(3년간)	1(1년간)
해당년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1	×	×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전년 12월~ 이듬해 5월, 매월) ※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인이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1	1	1 (에너지업제외)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
광업원부 등본 원본	×	×	1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	1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1	1	1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전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1	1	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 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처리절차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병역지정업체 서류접수 \rightarrow ② 평가등급 부여 추천(매년 7월 31일) \rightarrow ③ 병역지정업체 선정(매년 10월 중) \rightarrow ④ 선정결과 통보
 - (서류접수) 병역지정업체 관련 서류 접수
 - (평가등급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권자로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
 - (업체선정) 병무청은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를 선정 및 통보함
 - (결과통보)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08호)」 제10조제1항

6)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경영인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영인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음

-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자료 등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 · 접수 • (직접입력) 홈페이지 직접입력 https://www.hrdb.go.kr

- 인물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입력 후 이력서 첨부

• (이메일 송부) 대표이메일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신청서 혹은 개인 소지 이력서를 송부

- 대표메일주소: hrdb@korea.kr

제출서류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등록

문의처 ● 인사혁신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www.mpmm.go.kr/)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6호)」 제2조

7)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의 여성 임원 및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음
 -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자료 등에 따라 여성인재로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 · 접수

- (직접등록)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등록하기 홈페이지 직접입력
 - 주소: www.mogef.go.kr
-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대표메일주소: :promotion@kigepe.or.kr
 - 팩스번호: 02-3156-6089

제출서류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등록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 1644-6621,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법적근거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여성가족부예규 제52호)」 제2조

8)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지원대상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지원내용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에 해당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법적근거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0호)」 제5조제1항

9)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과학기술유공자를 통한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에 필요 경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과학기술유공자들에 의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0)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관련 학과)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 벤처기업 인턴 근무 경력 학점이수 인정

지원대상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중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

※ 정보통신 관련 학과

-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함
- 1. 전산 · 컴퓨터 공학
-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 3. 정보 · 통신 공학
- 4. 전기 공학
- 5. 전자 공학
- 6. 제어계측 공학
- 7. 반도체 · 세라믹 공학
-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지원내용

•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허용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번호 : 1335, 홈페이지 : www.msit.go.kr)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은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의 방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송출비를 지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계약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방송광고 송출비를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할인시간대 내·외의 두 가지 단계별 지원으로 구성됨
 - ① 할인시간대 지원
 - 정상가 기준 70%의 할인가로 판매함
 - (TV) KBS, MBC
 - (라디오) 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PBC FM, FEBC, YTN FM 가 해당됨
 - ② 할인시간대 외 지원
 - 정상가 청약 구매시 250%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광고를 송출
 - (TV) KBS, MBC, EBS
 - (라디오) MBC-AM/FM, KBS-AM/FM, CBS-AM/FM, YTN FM, BBS FM, PBC FM

신청 · 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온라인 접수 (매월 20일까지)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 벤처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설명 또는 상품설명 카달로그 1부

처리절차

• 지원절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원서류 온라인접수(매월 20일까지) → ② 지원대상선정(차월 1일)

- (지원서류 접수) 매달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지원대상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협의회와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1년 내 광고 미집행으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1년이 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번호 : 02-731-7114, 홈페이지 : https://kobaco.co.kr/)

법적근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2)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제작비를 지원하여 높은 방송광고 소재의 제작비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TV 방송광고 혹은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함

• TV는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를 지원함

• 라디오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함

•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의 사업수행 협약체결을 통해 제작비를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혁신형 중소기업 제작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1부, 기업인증서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3개년 재무제표, 가점사항 증빙서류(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등

처리절차 •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지원 신청 → ③ 지원대상 선정 → ④ 사업수행 협약 체결 →

⑤ 사업수행 → ⑥ 기금지원 신청 → ⑦ 검증 및 지원결정 → ⑧ 효과평가 조사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번호 : 02-731-7114, 홈페이지 : https://kobaco.co.kr/)

법적근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PARTII 가점대상 지원사업

- 1. R&D
- 2. 인력
- 3. 판로/수출



벤처기업 가점대상 지원사업 요약



분류	사업명	우대사항 및 지원내용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 가점 1점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간 연계지원
	산학연 Collabo R&D 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대학 보유자원 활용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 상용화 지원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기능성 원료 개발지원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기획,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R&D 기획 및 R&D사업연계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	- 벤처기업 가점 1점 -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포스트 규제자유특구연계R&D	- 벤처기업 가점 1점 - 사전기획,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스마트 제조(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지원 등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신규 솔루션 개발 등(수행방식에 따라 상이)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기술애로 솔루션 및 연구개발 등 지원

분류	사업명	우대사항 및 지원내용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연구개발비 등 지원(세부사업별 상이)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R&D 기획 및 연구개발 지원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지원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해외 기술협력국 기술이전 지원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방산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인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5점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4점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벤처기업 가점 1점 - 공학컨설팅센터 기술전문가 매칭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벤처기업 가점 3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판로 / 수출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 제조/구매 적격심사 : 벤처기업 가점 2점 - 일반용역 적격심사 : 벤처기업 가점 1.5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벤처기업 가점 1점 - 수출바우처 자동선정, 수출금융지원 우대 등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및 한도 상이)

공고·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및 한도 상이)

공고·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및 한도 상이)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4)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사업 간 연계지원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5)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1점

지원내용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협력 R&D지원

• 사업화 중심의 연구개발비 지원 등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6)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ㆍ사업화 역량 제고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1점

지원내용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공고 · 접수

7)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과제기획 : 사업성 검증 및 기획컨설팅 지원

• R&D지원: 개발 및 고도화 R&D지원

• 임상지원 : 개발 및 고도화 R&D 결과에 대한 후속 임상지원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8)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친환경분야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기획 : 아이디어 고도화 및 R&D 적용 지원

• 개발 : 리빙랩 플랫폼을 통한 개발제품 상용화 지원

• 실증: 사용성 평가를 통한 양산, 사업화 지원

- 공고 ·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9)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 지원 및 R&D사업 연계지원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10) 지역특화산업육성+(R&D)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신장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한도 상이)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1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연계R&D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 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R&D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사전기획: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 사전기획 완료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R&D 자금지원

공고·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1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 (세부 분야별 지원품목 등 상이)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13)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신규 솔루션 개발 등 (과제 수행방식에 따라 상이)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14)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등 지원

-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15)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 · 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등 (세부사업별 기준 및 한도 등 상이)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16)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기술 \cdot 인프라 \cdot 인력을 보유한 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소부장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R&D 공동기획: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공동 소부장기술개발 기획

• 전략협력 R&D: R&D 공동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 선별, R&D 지원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7)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 해외인즉규격에 적합한 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공고 ·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협력국(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 ·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지원

-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지원내용 ●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

공고·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9)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전체 평가점수에의 0.5% 가점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필수) 및 시장개척비(개발 성공 과제) 지원

공고 · 접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문의처 • 방위사업청 (대표전화 : 1577-1118)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 및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우대사항 ● (전문연구요원) 벤처기업: 5점

• (산업기능요원) 벤처기업: 4점

__지원내용__ ●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벤처기업 5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벤처기업 4점 부여

공고·접수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www.rndjm.or.kr)

•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문의처 • (전문연구요원) 한국산업기술협회 (대표전화 : 02-3460-9140)

• (산업기능요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2)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지원내용● 공학컨설팅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전문가 매칭, 기술전문가와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3)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3점

■ 지원내용 ●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세부사업별 상이)

공고 ·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1)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구매 및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우대사항 ● 제조/구매 적격심사 : 벤처기업 가점 2점

• 일반용역 적격심사 : 벤처기업 가점 1.5점

■ 지원내용 ● 조달청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2점 가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1.5점 가점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2)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내수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 ·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 육성

우대사항 • 벤처기업 가점 : 1점

■ 수출바우처 사업 자동선정,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 사업 전용 트랙 참여 등

공고.접수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표전화: 055-752-8580)